

서울주택도시공사 SH시민주주단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민참여 활성화와 시민협치 실현을 통하여 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구성하는 SH시민주주단(이하 “주주단”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민주주 모집공모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시민주주(이하 “주주”라 한다)’는 공사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시민 협치의 실현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위촉한 명예주주를 말하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와 구별된다.
3. ‘운영부서’는 주주단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는 총회, 정책토론회 등(이하 ‘총회 등’이라 한다)에 토론 안건으로 상정된 사업 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기획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주단은 공사가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주주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주주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공사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주주단

제5조 (구성) ① 주주단은 시민주주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300인 이내의 주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주주단에는 공사 업무 관련 협회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사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사장이 위촉하고, 주주단을 대표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주주단은 주주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0명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시민 주주와 전문가 주주로 구성하되 시민주주는 주주 응모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전문가 주주는 별도 위촉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단장과 간사를 둔다.

⑤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주주단의 단장을 겸임한다

⑥ 위원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주주단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운영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해촉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의 개최 요구 등 주주단 운영에 관한 공사와의 공식적인 소통창구
 2. 주주단 역할 설정 및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
 3. 주주의 해촉 심의 및 결정
 4. 기타 주주단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주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초 운영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기획위원회의 시민위원 5명과 제1회 주주총회에서 추가 선출한 5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획위원회) ① 주주단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하여 최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주주단 조직체계, 필요지원제도 등 주주단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2. 제1회 주주총회 개최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 ②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위원, 외부전문가, 내부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시민위원은 주주공모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하여 5명을 선정한다
 2. 외부전문가는 사장이 별도로 2명을 위촉한다.
 3. 내부 위원은 주주단 운영 담당 부서장 등 3명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주주 모집) ① 주주는 시민 주주와 전문가 주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 ② 시민 주주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전문가 주주는 공사 업무 관련 협회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시민 주주와 전문가 주주의 비율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민 주주는 지원자 중에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되,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공사는 효율적인 주주단 운영을 위하여 주주를 분할 모집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주주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9조 (주주의 역할 등) ① 주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공사 발전에 대한 정책 제안
2. 공사 업무계획, 시민불편사항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시
3. 제12조에 따라 공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4. 기타 공사와의 협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협력

② 공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주의 의견에 대해서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 개인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의 제안 또는 의견
2. 총회 또는 분과회의 등에서의 토론 안전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공사 부서 또는 직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의 요구

제10조 (주주의 해촉)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주주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 사업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주의 자격으로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② 주주의 해촉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 장 회 의

제11조 (회의) ① 주주단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총회가 소집될 경우에는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⑤ 정책토론회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며,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총회 등은 회의를 지원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제12조 (안건상정 및 의견요청) ① 사업부서는 주주단의 의견 또는 제안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부서에 해당 사항을 주주단 토의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총회 등과 운영위원회, 주주 개인 등에 대하여 제1항의 토의안건 또는 기타 중요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주주단은 공사가 요청한 토의안건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는 토의안건 등에 따라 찬반의견, 이의제기,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반영) ① 운영부서에서는 총회 등에서 제안한 의견을 7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부서는 제안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운영부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이메일, 플랫폼 등을 통하여 주주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단장은 총회 등의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주주의 회의록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요청주주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활동지원

제15조 (회의 참석 등) 운영부서는 주주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에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등) ① 공사는 총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경영성과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정한 안전
3. 총회 등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수행하고, 보고와 관련하여 주주단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부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총회 등의 토론과 관련한 자료에 한한다.

제17조 (회의비 지급 등) ① 주주가 회의 등에 참여하거나 공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비 또는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주주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1항과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활동공간의 제공) ① 공사는 주주단 활동을 위해 별도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주주의 상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온라인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주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